

**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- 5호**

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“의약외품 범위 지정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46호 2010. 3. 12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1년 1월 19일  
보건복지부장관

**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**

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.

사. 구강청결용 물휴지

아.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

제2호가목의 4) 중 “치아(의치포함)”을 “치아”로 하고, 같은 호 자목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) 의치(틀니)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

**부 칙(2011. 1. 19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사목과 제2호자목의 5)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약사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(제조업자에 한함)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.

